

# 신 체 감 정 촉 탁 신 청

사 건 2000구 0000호 장해등급처분취소

원 고 ㅇㅇㅇ

피 고 근로복지공단

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.

## 다 음

1. 증명할 사실

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

2. 피감정인

가. 성 명: 0 0

나. 주민등록번호 : 111111-1111111

다. 주 소: 00시 00구 00길 00

- 2. 신체감정할 사항 : <별지>기재와 같음.
- 3. 감정할 사항

(주과목: 정신과, 보조과목: 안과, 이비인후과)

4. 첨부서류

(1) 각 진단서 사본 각 2통

(2)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통

(3) 재결서 1통

2000.0.0.

위원고 ○ ○

#### ○○행정법원 귀중



### 감 정 사 항

#### □ 피감정인

가. 성 명: 0 0

나. 주민등록번호 : 111111-1111111

다. 주 소: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

피감정인은 ○○시 ○○역 부근에서 철길 근처에서 매일 08:30에 출근하여 17:30까지 공공근로작업에 투입되어 위 철길근처의 잡초도 정리하고 자갈을 고르는 등의 작업을 하여 오던 중, 20○○. ○. 0. 14:00경에서 15:00경 사이에서울 망우역 부근에서 작업을 하면서 위 공공근로기간 동안의 과도한 업무와이 공공근로작업의 반장으로서 일일 일정량의 작업을 마쳐야 하는 스트레스및 위 철길근처에 휴식 공간이 마땅히 없었고 특별히 휴식시간이 없었던 상황에서 이로 인하여 작업 도중 작업 현장에서 쓰러지게 된 것인데 이 시각의 피감정인이 일하던 철로 주변의 온도는 철로의 열로 인하여 52℃까지 이르는 등작업하기에는 무척 힘든 상황이었는데, 이로 인하여 피감정인은 뇌동맥류파열, 지주막하뇌출혈 등으로 약 1년 동안 요양하다 치료 종결하고 장해보상청구를하였으나 20○○. ○. ○. 근로복지공단 서울○○지사에서 장해등급 제5급 8호(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)로 결정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○○. ○. 이를 기각하는 재결이 있었던 1바,

#### 1. 피감정인이 20○○. ○. ○. 입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

- (1) 피감정인의 운동기능 저하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(장해등급 제5급 제8호:특별 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지 정도인지 혹은 장해등급 제3급 제 3호: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정도인지)
- (2) 고도의 기억력 장해로 인하여 실언, 실행, 실어의 행동을 보이고 감정둔화, 의욕감퇴 등의 인격변화 현상이 있는지 여부
- (3) 시력이 저하되어 야맹증이 있는지, 후각 등 냄새조차 분별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인지 여부
- (4) 장기 기억력, 주의집중능력, 수리적 계산능력, 언어적 이해력 등이 손상되어

### 정신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



2. 이러한 상기 증상 등을 종합하여 피감정인이 장해등급 제5급 제8호에 해당하는 지 혹은 제3급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. 끝.